

서울시 녹색기업 창업펀드 추가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92
------	-----

2022. 9. 22.  
기획경제위원회

## 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8월 29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22년 9월 2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14회 임시회】

-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2022. 9. 22.)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황보연 경제정책실장)

### 1. 제안이유

가. 서울시는 2050 탄소중립 달성 등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견인하기 위해 2011년부터 녹색기업 창업펀드를 조성하는 등 녹색 산업 육성책을 펼치고 있음.

나. 시가 직접 출자하여 조성·운용되었던 기존 펀드의 회수금\*을 재출자

하여 녹색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추가 조성하고자 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전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 녹색기업 창업펀드 3호('13~'22), 市 20억원 출자하여 21.05억원 회수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예치)

## 2. 주요내용

### 가. 추진근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9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
-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23조

### 나. 필요성

- 2050 탄소중립 달성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녹색산업 육성이 필요
- 서울시 녹색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서는 녹색분야 초기창업자 등 중소기업의 생존율을 높이는 방안 필요
- 기존 펀드의 회수금을 활용하여 잠재력 있는 녹색기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 필요

※ 녹색기업 창업펀드 조성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조성년도 (운용사)	존속기간 (투자/회수)	결성 금액	서울시 출자액	서울 녹색기업 투자집행액 (총 투자집행액)	서울 녹색기업 투자 수 (총 투자기업 수)
계			605	70	128 (569.7)	15 (69)
1호	2011년 (서울투자파트너스)	7년 (4년/3년)	160	20 (SBA 출연금)	40 (138.7)	5 (16)
2호	2012년 (디에스씨인베스트먼트)	8년 (4년/4년)	100	20 (SBA 출연금)	20.5 (96.4)	4 (19)
3호	2013년 (메디치인베스트먼트)	8년 (3년/5년)	200	20 (市 중소기업육성기금)	45 (207.1)	3 (20)
4호	2017년 (코메스인베스트먼트)	8년 (4년/4년)	145	10 (SBA 기금)	22.5 (127.5)	3 (14)

#### 4. 녹색기업 창업펀드 출자 계획

##### 가. 추진방향

- 정부 정책펀드와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펀드 운용
  - ▶ 정부출자기관(모태펀드 등)과 민간투자를 확보하여 안정적 재원 확보
- 市 녹색산업 육성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글로벌 기업 성장 지원
  - ▶ 녹색산업지원센터 IR컨설팅, 투자유치설명회 등 녹색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연계
- 우수 펀드 운용사를 선발, 회수자금을 재투자하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
  - ▶ 펀드 운용 전문성이 높은 벤처캐피탈을 선발하여 수익 안정성 확보
  - ▶ 회수 자금 재투자를 통한 선순환 녹색산업 생태계 및 기업성장 환경 조성

##### 나. 출자금액 : 20억원

- 출자재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기존 녹색기업 창업펀드 회수금)

##### 다. 녹색기업 창업펀드 추가 조성 계획

- 펀드명 : 녹색기업 창업펀드 제5호

- 조성규모 : 200억원
  - 서울시(20억원), 모태펀드(결성예정액의 지정출자비율), 민간출자자 등
- 조성형태 : 벤처투자조합
- 투자대상 : 창업·중견기업, 서울소재 녹색기업 등
  - 창업후 7년 이내 기업(창업자) : 출자금 총액의 40% 이상
  - 중견기업 : 출자금 총액의 20% 이상
  - 서울소재 녹색기업(창업 중소기업·벤처기업) : 서울시 출자금의 200% 이상
- 운용기간 : 8년 이상 장기투자 (투자 3~4년, 회수 4~5년)
- 소요예산 : 20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좌에 예치 중인 녹색기업 창업펀드(3호) 투자 회수금 활용

### Ⅲ.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 가. 동의안의 개요

- 2050 탄소중립<sup>1)</sup> 달성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녹색산업<sup>2)</sup>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을 녹색기업<sup>3)</sup> 창업펀드에 재출자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됨.

#### 나.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녹색기업 창업펀드 조성 현황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서울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장기 저리의 융자 지원으로 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1965년부터 설치·운영되고 있음.
- 2018년에는 자금의 적시 공급과 투자 회수금의 재투자 구조를 설계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계정(소상공인담당관)과 투자계정(경제정책과)으로 각각 분리·운영하고 있음.

---

1) 탄소중립(Net zero) :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를 막기 위해 인간 활동에 의한 배출량은 최대한 감소시키고, 흡수량은 증대하여 순 배출량이 '0'이 된 상태이며 인간 활동으로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최대한 줄이고,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산림 흡수나 제거하여 실질적인 배출량을 '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말함.

2) 녹색산업 : 경제·금융·건설·교통물류·농림수산·관광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財貨)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산업(「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3) 녹색기업 :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자원과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 개선, 녹색경영체제의 구축 등을 통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제조 및 비제조 기업 또는 기관 및 개별 사업장, 지점·지사, 본부 등을 말함(「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2.).

- 투자계정은 유망산업(도심제조업, 바이오·의료, R&D, 문화콘텐츠)과 제4차 산업혁명 분야 관련 중소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혁신성장펀드로 조성·운용 중이며, 서울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관리하고 있음.
- 현재까지 혁신성장펀드의 실적을 살펴보면, 투자계정에서 1,279억 원을 출자해 2조 9,396억원의 펀드가 결성되었고, 서울 소재 기업(460개사)에 8,650억원이 투자됨.

### < 혁신성장펀드 조성 및 투자실적 >

(단위 : 억원, 괄호안은 市 출자액)

구 분	합 계	'18년	'19년	'20년	'21년
합 계	29,396 (1,279)	3,641 (130)	4,435.5 (192.5)	12,977.5 (448)	8,342 (508.5)
4차산업혁명	5,066.5 (179.5)	1,097 (35)	997 (32.5)	1,892.5 (72)	1,080 (78)
스마트시티	4,759.5 (202.5)	985 (30)	386 (22.5)	2,323.5 (72)	1,065 (78)
문화콘텐츠	2,430 (101)	466 (15)	700 (30)	505 (36)	759 (40)
창업지원	9,720 (368)	693 (30)	772.5 (42.5)	5,766.5 (168)	2,488 (127.5)
재도전지원	2,428 (130)	200 (10)	200 (15)	1,328 (45)	700 (60)
바 이 오	4,992 (150)	200 (10)	1,380 (50)	1,162 (55)	2,250 (125)

- 녹색기업 창업펀드(이하 “녹색펀드”)는 기후환경본부에서 진흥원 출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출자를 통해 2011년부터 중소기업과 녹색기업 등에 안정적인 투자자금을 지원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성장을 견인하고자 설치·운용 중임.

- 녹색 1호와 2호 투자조합<sup>4)</sup>은 진흥원 출연금으로 2011년(20억원)과 2012년(20억원)에 각각 160억원, 100억원 규모로 결성됐으며, 이후 3호, 4호 투자조합이 결성되면서 총 605억원(서울시·진흥원 출자액 70억원)이 조성됨.

### < 서울시 녹색기업 창업펀드 현황 >

펀드별 조합		조성액	조성일	운용기간	투자기업수 및 투자액		
					계	녹색기업	IT및기타
녹색 1호	서울투자 초기&녹색 벤처조합 (SBA에 출연금으로 출자)	160억 (SBA 20억)	'11.5.30.	7년 (4년투자, 3년회수)	16개사	5	11
					138.7억	40	98.7
녹색 2호	KU-DSC 드림제1호 그린투자조합 (SBA에 출연금으로 출자)	100억 (SBA 20억)	'12.7.12.	8년 (4년투자, 4년회수)	19개사	4	15
					96.4억	20.5	75.9
녹색 3호	메디치 중소-중견 녹색 성장사다리 창업투자조합 (SBA에 민간위탁 관리)	200억 (서울시 20억)	'13.9.16.	8년 (3년투자, 5년회수)	20개사	3	17
					207.1억	45	162.1
녹색 4호	코메스 2017-1 스타트업그린 투자조합 (SBA 기금으로 출자)	145억 (SBA 10억)	'17.9.5.	8년 (4년투자, 4년회수)	14개사	3	11
					127.5억	22.5	105.0
총 계		605억	-	-	69개사	15	54
					569.7억	128	441.7

※ 각 조합별로 서울시 출자금의 200% 이상을 녹색분야 기업에 투자 약정함.

- 녹색펀드는 공모로 선정된 운용기관이 투자위험에 대한 분산과 장기적·안정적인 자금 조달 등을 수행하며, 운용기간은 7년 또는 8년(3~4년 투자, 3~5년 회수)임.

4) 벤처투자조합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투자자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  
 모태조합 : 한국모태펀드로서, 한국벤처투자자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상호출자하여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한 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

- 올해 1분기까지 총 69개 기업에 569억 7천만원의 투자가 이뤄졌고, 이 중 서울 소재 기업은 16개에 128억원(22.5%)이 투자됨.
- 운용기간이 종료된 펀드(1~3호)의 회수금액은 644억 4천만원으로, 펀드조성액(605억원) 대비 수익률은 6.5%, 서울시(SBA) 분배금은 84억 7천만원임(출자액 대비 수익률 21%).

### < 녹색기업 창업펀드 투자운용사 및 회수내역 >

( '22. 3월 기준)

펀드별 조합 [투자운용사]	펀드 조성액 (억원)	투자 금액 (억원)	회수 금액 (억원)	서울시(SBA) 출자액 (억원)	서울시(SBA) 분배금 (억원)			
					원금	수익	합계 <sup>5)</sup>	
녹색 1호	서울투자 초기&녹색벤처조합 [서울투자파트너스(주)]	160	138.7	196. 3	20 (SBA 출연금)	11.7	13.0	24.7
녹색 2호	KU-DSC 드림 제1호 그린투자조합 [DSC인베스트먼트(주)]	100	96.4	206. 7	20 (SBA 출연금)	20	17	37
녹색 3호	메디치 중소-중견 녹색성장사다리 창업투자 조합 [메디치인베스트먼트(주)]	200	207.1	210. 5	20 (市 중소기업 육성기금)	19.9	1.1	21.0
녹색 4호	코메스 2017-1 스타트업그린 투자조합 [코메스인베스트먼트(주)]	145	127.5	30.9	10 (SBA 기금)	2.0	-	2.0
계		605	569.7	644.4	70	53.6	31.1	84.7

#### 다. 녹색기업 창업펀드 출자의 적정성

- 이번 출자금(20억원)은 제3호 펀드의 회수금(21억 5백만원)을 활용해 잠재력 있는 녹색기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임.

5) 출자금 전액이 원금으로 회수되는 것이 아니며, 분배금(원금+수익)이 출자금을 초과하는 만큼이 실질적인 수익임.



- 녹색펀드 추가 조성계획(제5호)에 따르면, 서울시는 총 20억원을 출자하고 정부 모태펀드와 민간투자액을 합쳐 200억원의 펀드를 8년(투자 3~4년, 회수 4~5년)간 운용할 예정임.
- 투자대상은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과 중견기업 등이고, 서울 소재 녹색기업에 서울시 출자금의 200% 이상을 투자함.
- 녹색 중소기업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투자유치, 판로개척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녹색펀드 투자를 통해 신성장 녹색산업 육성과 녹색성장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RE100<sup>6)</sup> 참여와 ESG<sup>7)</sup> 투자가 확대되고 있고, 환경 비친화적 기업의 투자를 제한하는 등의 글로벌 규제가 강화되는 것을 고려하면 시의성이 있는 투자로 판단됨.
- 다만, 20억원 출자 이외에는 추가 출자계획이 없고 기존 혁신성장펀드(6개)와 비교할 때 투자규모가 매우 열악하다는 점에서 녹색성장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적 의지를 확인하기 어려움.

---

6) RE100 : 재생에너지 전기(Renewable electricity) 100%를 의미하고,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고 약속하는 글로벌 캠페인.

7) ESG :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며, 이들 요소를 고려해 기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기업성과지표.

- 또한, 녹색산업 육성과 녹색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은 ‘기후환경 본부’ 소관 사무<sup>8)</sup>이고,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의 지원대상은 “6개 혁신성장펀드”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펀드 투자와 운영상의 소관 사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서울시는 기존 혁신성장펀드의 투자 약정기간이 완료돼 미래 기술 유망 산업군(로봇, AI, 메타버스 등)에 대한 투자를 지속 추진하기 위해 ‘서울 비전 2030 펀드’를 추가 조성할 계획임(참고자료).
- 서울 비전 2030 펀드는 AI, 로봇 등 미래기술 유망 산업군과 서울형 뷰티산업 등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선도도시 도약을 위해 내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총 3,500억원을 출자함.

### < 서울 비전 2030 펀드 출자계획 >

(단위 : 억원)

구 분	비 율	총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100%	3,500	700	850	950	1,000
① 스케일업펀드	32%	1,100	200	250	300	350
② 기술 첫걸음 펀드	14%	500	100	100	150	150
③ 디지털 대전환 펀드	17%	600	100	150	150	200
④ 창업지원펀드	15%	550	100	150	150	150
⑤ 서울바이오펀드	13%	400	100	100	100	100
⑥ 문화콘텐츠펀드	10%	350	100	100	100	50

- 8)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4조(기후환경본부에 두는 과) ① 기후환경본부에 자원회수시설추진단·기후환경정책과·친환경건물과·친환경차량과·대기정책과·녹색에너지과·자원순환과·생활환경과를 둔다.
- ⑧ 녹색에너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14. (생략)
  15. 녹색기술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6. 녹색 중소기업 해외통상 지원에 관한 사항

- 그러나 서울 비전 2030 펀드에 출자하기 위해서는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앞서 의회에 동의안을 심의받아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7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시 녹색기업 창업펀드 추가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의안 번호	192
----------	-----

제출년월일 : 2022년 8월 29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가. 서울시는 2050 탄소중립 달성 등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견인하기 위해 '11년부터 녹색기업 창업펀드를 조성하는 등 녹색산업 육성책을 펼치고 있음.

나. 시가 직접 출자하여 조성·운용되었던 기존 펀드의 회수금\*을 재출자하여 녹색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추가 조성하고자 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전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 녹색기업 창업펀드 3호('13~'22), 시 20억원 출자하여 21.05억원 회수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예치)

## 2. 주요내용

가. 추진근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9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
-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23조

나. 필 요 성

- 2050 탄소중립 달성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녹색산업 육성이 필요
- 서울시 녹색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서는 녹색분야 초기창업자 등 중소

## 기업의 생존율을 높이는 방안 필요

- 기존 펀드의 회수금을 활용하여 잠재력 있는 녹색기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 필요

### ※ 녹색기업 창업펀드 조성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조성년도 (운용사)	존속기간 (투자/회수)	결성 금액	서울시 출자액	서울 녹색기업 투자집행액 (총 투자집행액)	서울 녹색기업 투자 수 (총 투자기업 수)
			605	70	128 (569.7)	15 (69)
1호	2011년 (서울투자파트너스)	7년 (4년/3년)	160	20 (SBA 출연금)	40 (138.7)	5 (16)
2호	2012년 (디에스케이베스트먼트)	8년 (4년/4년)	100	20 (SBA 출연금)	20.5 (96.4)	4 (19)
3호	2013년 (메디케어베스트먼트)	8년 (3년/5년)	200	20 (市중소기업육성기금)	45 (207.1)	3 (20)
4호	2017년 (코메스인베스트먼트)	8년 (4년/4년)	145	10 (SBA 기금)	22.5 (127.5)	3 (14)

## 3. 녹색기업 창업펀드 출자 계획

### 가. 추진방향

- 정부 정책펀드와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펀드 운용
  - 정부출자기관(모태펀드 등)과 민간투자를 확보하여 안정적 자원 확보
- 市 녹색산업 육성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글로벌 기업 성장 지원
  - 녹색산업지원센터 IR컨설팅, 투자유치설명회 등 녹색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연계
- 우수 펀드 운용사를 선발, 회수자금을 재투자하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
  - 펀드 운용 전문성이 높은 벤처캐피탈을 선발하여 수익 안정성 확보
  - 회수 자금 재투자를 통한 선순환 녹색산업 생태계 및 기업성장 환경 조성

### 나. 출자금액 : 20억원

- 출자재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기존 녹색기업 창업펀드 회수금)

## 다. 녹색기업 창업펀드 추가 조성 계획

- 펀드명 : 녹색기업 창업펀드 제5호
- 조성규모 : 200억원
  - 서울시(20억원), 모태펀드(결성예정액의 지정출자비율), 민간출자자 등
- 조성형태 : 벤처투자조합
- 투자대상 : 창업·중견기업, 서울소재 녹색기업 등
  - 창업후 7년 이내 기업(창업자) : 출자금 총액의 40% 이상
  - 중견기업 : 출자금 총액의 20% 이상
  - 서울소재 녹색기업(창업 중소기업·벤처기업) : 서울시 출자금의 200% 이상
- 운용기간 : 8년 이상 장기투자 (투자 3~4년, 회수 4~5년)
- 소요예산 : 20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좌에 예치 중인 녹색기업 창업펀드(3호) 투자 회수금 활용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9조

제59조(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은 녹색기술·녹색산업에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거나 보증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매년 녹색기술·녹색산업 관련 기업이나 연구기관 등의 고충을 조사하고 불합리한 규제 등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계 기관에 대하여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른 고충조사,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71조(기금의 투자 등) ①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 ②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운용계획의 범위에서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③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는 같은 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에서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 ④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7.>
  - 1. 벤처투자조합
  - 2. 모태조합
  -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23조

제23조(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① 시장은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 실증사업에 대한 실증장소 및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소득세·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때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등의 업무를 서울시 출자·출연 기관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작성자 : 경제정책과 혁신기술팀 한용호 (☎ 2133-5224)